

제 389 회 임시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26. 4. 23.(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국
보 건 건 강 국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목 차

I.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 1

II. 복지국 소관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① 일반회계 3

III. 보건건강국 소관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

 ① 일반회계 1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경기도지사가 2026. 4. 17. 제출하여 2026. 4. 22.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I.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액 (A)	추경예산안 (B)	증 감 (C=B-A)	증감률 (C/A)	비 고
경 기 도	40,057,744	41,681,333	1,623,589	4.1%	
일 반 회 계	35,724,434	37,337,765	1,613,331	4.5%	
특 별 회 계	4,333,310	4,343,568	10,258	0.2%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453,507	13,671,542	1,218,035	9.8%	
일 반 회 계	10,191,475	11,409,510	1,218,035	9.8%	
복 지 국	9,385,545	10,578,345	1,192,800	12.7%	
보 건 건 강 국	795,846	821,081	25,235	3.2%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복 지 위 소 관)	10,084	10,084	-	-	
특 별 회 계	2,262,032	2,262,032	-	-	
의 료 급 여 기 금 (복 지 사 업 과)	2,262,032	2,262,032	-	-	기타특별회계

□ 경기도 2026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안 규모는 41조 6,813억 3천3백만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40조 577억 4천4백만원 대비 1조 6,235억 8천9백만원(4.1%) 증가했음

○ 일반회계 : 37조 3,377억 6천5백만원으로 1조 6,133억 3천1백만원 증가(4.5% ↑)

○ 특별회계 : 4조 3,435억 6천8백만원으로 102억 5천8백만원 증가(0.2% ↑)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3조 6,715억 4천2백만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12조 4,535억 7백만원 대비 1조 2,180억 3천5백만원 (9.8%) 증가했음

○ 일반회계 : 11조 4,095억 1천만원으로 1조 2,180억 3천5백만원 증가(9.8% ↑)

○ 특별회계 : 해당 없음

※ 2026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기도 예산 37조 3,377억원의 30.56%를 차지하여, 2026년도 본예산 규모 28.53% 대비 소폭(2.03%) 증가했음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부기명 기준으로 국고보조 사업은 총 36개 사업에서 1조 1,587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11개 사업에서 12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음. 자체사업은 총 7개 사업에서 606억 1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감액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보건복지위원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 부기명 기준	합계	국고보조금	자체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법적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	
증감액 (사업 수)	1,218,035 (54개)	1,157,416 (47개)	60,619 (7개)	- (-)	- (-)	- (-)
증액 (사업 수)	1,219,325 (43개)	1,158,706 (36개)	60,619 (7개)	- (-)	- (-)	- (-)
감액 (사업 수)	△1,290 (11개)	△1,290 (11개)	- (-)	- (-)	- (-)	- (-)

□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 속에서 부족한 도비 재원을 보전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한 점, ▲도민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 1,335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규 편성하는 등 위기 대응 및 취약계층 민생안정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한 점이 주요 특징임

II. 복지국 소관

1.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①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액(A)	추경예산안(B)	증 감 (C=B-A)	증감률 (C/A)
복 지 국	8,178,004	9,325,266	1,147,262	14.0%
세 외 수 입	-	-	-	
경 상 적 세 외 수 입	-	-	-	
임 시 적 세 외 수 입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	
지 난 연 도 수 입	-	-	-	
지 방 교 부 세	-	-	-	
국 고 보 조 금 등	8,178,004	9,195,882	1,017,878	12.4%
국 고 보 조 금	7,733,683	8,751,300	1,017,617	13.2%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4,321	444,582	261	0.1%
기 금	-	-	-	
지 방 채	-	129,384	129,384	신규
국 내 차 입 금	-	129,384	129,384	신규
국 외 차 입 금	-	-	-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	-	-	
보 전 수 입 등	-	-	-	
내 부 거 래	-	-	-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액(A)	추경예산안(B)		증 감 (C=B-A)	증감률 (C/A)
			구성비		
복 지 국	8,178,004	9,325,266	100	1,147,262	14.0%
복 지 정 책 과	13,474	1,150,521	12.3	1,137,047	8,438.8%
복 지 사 업 과	2,037,603	2,040,190	21.9	2,587	0.1%
노 인 복 지 과	4,870,412	4,870,200	52.2	△212	△0.004%
장 애 인 복 지 과	1,107,335	1,110,670	11.9	3,335	0.30%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149,180	153,685	1.7	4,505	3.0%

□ 2026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세입예산안은 9조 3,252억 6천6백만원으로, 본예산 8조 1,780억 4백만원 대비 1조 1,472억 6천2백만원 증가(14.0%)했음

○ 복지정책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조 75억원과 지방채 차입금 1,259억원 등 국고보조금등과 지방채 차입금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임

나.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액(A)	추경예산안(B)		증 감 (C=B-A)	증감률 (C/A)
			구성비		
복 지 국	9,385,545	10,578,345	100	1,192,800	12.7%
복 지 정 책 과	106,355	1,247,426	11.8	1,141,071	1,072.9%
복 지 사 업 과	2,488,107	2,490,681	23.5	2,574	0.1%
노 인 복 지 과	5,309,161	5,350,396	50.6	41,235	0.8%
장 애 인 복 지 과	1,271,950	1,275,365	12.1	3,415	0.3%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209,972	214,477	2.0	4,505	2.1%

□ 2026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10조 5,783억 4천5백만원으로, 본예산 9조 3,855억 4천5백만원 대비 1조 1,928억원 증가(12.7%)했음

※ 2026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11조 4,095억 1천만원의 94.4%를 차지함

□ 신규사업(3개 사업) ※ 부기명 기준

○ 복지국 소관 신규사업은 복지정책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노인복지과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돌봄 보조 인력지원(지방채)’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돌봄 보조 인력 지원(지방채)’ 총 3건으로, 모두 국비 교부에 따라 도비(지방채)를 매칭한 국조보조사업임

○ 이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도민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 및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며,

○ 나머지 2개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돌봄 보조 인력의 인건비 지원 사업임

<제1회 추경예산안 신규사업 내역(부기명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안	사업내용	비고
계	3개 사업	1,133,634		
복지정책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1,133,460	소득하위 70% 도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100~600천원 지원하여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부담 경감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759(2026.4.15.)	
노인복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돌봄 보조인력지원(지방채)	116	사회복지시설 업무부담 급증에 따른 돌봄 보조인력지원(개소당 1명, 총 6명)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721(2026.4.13.)	
노인복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돌봄 보조인력지원(지방채)	58	사회복지시설 업무부담 급증에 따른 돌봄 보조인력지원(개소당 1명, 총 3명)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721(2026.4.13.)	

□ 성립전예산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 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15개 사업에서 총 1조 1,450억 6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4개 사업에서 5억 3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음. 자체사업은 5개 사업에서 총 482억 7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음

<< 복지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증감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 부기명 기준	합계	국고보조금	자체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법적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	
증감액 (사업 수)	1,192,800 (24개)	1,144,524 (19개)	48,276 (5개)	- (-)	- (-)	- (-)
증액 (사업 수)	1,193,337 (20개)	1,145,061 (15개)	48,276 (5개)	- (-)	- (-)	- (-)
감액 (사업 수)	△537 (4개)	△537 (4개)	- (-)	- (-)	- (-)	- (-)

□ 20% 이상 증액사업(6개 사업) ※ 부기명 기준

-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부기명 기준)한 사업은, 금융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과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증액(100%),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확대를 위한 ▲복지정책과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28억 5백만원 증액(607%), 예산 부족분 추가 확보를 위한 ▲노인복지과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414억 7천1백만원 증액(38%) 등 총 6개 사업으로, 508억 9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음

<제1회 추경예산안 20% 이상 증액 내역(부기명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A)	추경안 (B)	증액 (C=B-A)	증액률 (C/A)	증액 내역
계	6개 사업	119,823	170,720	50,897	42%	
복지정책과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00	6,000	3,0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가 상승, 고물가·고금리 부담 장기화 우려에 따라 긴급 생활자금 수요 대응 및 복합지원으로 금융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 대출지원금 3,000백만원
복지정책과	일상돌봄서비스사업	3,477	4,258	78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증가(1,314명 → 1,586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142 (2026.4.13.)호
복지정책과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462	3,267	2,805	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인건비 대상자 확대(9개 사군 56명 → 31개 사군 396명) 내시 반영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6899(2025.12.29.)호
복지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4,965	7,665	2,700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불황 및 물가 상승으로 긴급복지 수요는 증가했으나, '26년 본예산은 '25년 대비 39% 감액 편성됨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07,727	149,198	41,471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부족분 추가 확보, 보건복지부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소요액 결정 통보」 반영 - 2,694천원 × 15,394명 × 2개월 × 5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192	332	140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증가(12개소→16개소)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083(2026.2.9.)호

□ 20% 이상 감액사업(2개 사업) ※ 부기명 기준

-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감액(부기명 기준)한 사업은, 복지사업과 ▲‘청년 사회서비스 사업단’ 3천5백만원 감액(△35%) 및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9천2백만원 감액(△31%) 총 2개 사업으로, 1억 2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음

<제1회 추경예산안 20% 이상 감액 내역(부기명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A)	추경안 (B)	감 액 (C=B-A)	감액률 (C/A)	감액 내역
계	2개 사업	396	269	127	32%	
복지사업과	청년 사회서비스 사업단	101	66	△35	△35%	○ 보건복지부 공모 결과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당초 1.5개소 → 변경 1개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633 (2026.3.4.)호
복지사업과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295	203	△92	△31%	○ 보건복지부 사업량 감소 (438명 → 301명) 내시 반영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5851 (2025.12.24.)호

다. 복지국 주요사업 검토의견

□ 고유가 피해지원금(국비/지원) [복지정책과] <사업명세서 385p, 사업설명서 37p>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도민
- (지원내용) 1인당 10만 원 ~ 최고 60만 원 (소득별·지역별 차등 지원)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사업기간) 2026. 4월 ~ 7월(신청·지급), 사용기한 : 2026. 8. 31.까지

○ 예산 요구액 : 증 1조 1,334억 5천9백만원(국 1조 75억 2천만원, 도 1,259억 3천9백만원)

※ 보조비율 : 국 80%, 도 10%, 시군 10% / 도비재원 : 지방채(모집공채) (단위 : 백만원)

편성목(통계목)	부기명	경정액(A)	기정액(B)	금회요구액(A-B)	산출내역
계		1,133,459	-	1,133,459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 보조재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채)	1,133,459	-	1,133,4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피해지원금 1,120,176,225 천원 - 소득 하위 70%(수급자, 차상위 제외) 8,989,552명 × 100천원 × 90% ≙ 809,059,680천원 - 기초수급자 553,636명 × 550천원 × 90% ≙ 274,049,820천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76,275천원 × 450천원 × 90% ≙ 30,891,375천원 - 인구감소(가평, 연천) 추가지원 (64,004명 × 100천원 × 90%) + (9,222명 × 50천원 × 90%) = 6,175,350천원 - 부대비용(발행비, 인건비, 홍보비 등) 피해지원금 사업비 × 1.2% ≙ 13,283,649천원

○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서민층의 교통비·난방비·생활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한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즉각적인 가계 부담 완화와 생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해당 사업을 통해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 직접적인 가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초수급자(55만원), 차상위·한부모(45만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인구감소 지역(가평·연천)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비교 시, 국비지원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져 지자체의 부담이 커졌고, ▲도비 매칭분 1,259억원 전액을 지방채로 조달함에 따라 경기도의 채무 부담이 증가했음. ▲향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복지사업이나 투자사업의 자원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산출내역이 포괄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원 대상자 수 산정의 구체적 근거(소득 구간별 인원 산출 기초자료, 건강보험료 기준선 등)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예산 소요의 적정성을 정밀하게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 부대비용(발행비, 인건비, 홍보비 등)이 피해지원금 사업비의 1.2%(약 133억원)로 산정되어 있으나, 세부 항목별 내역이 부재하여 부대비용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 곤란함
- 향후 유사한 현금성 지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책의 공정성을 위해 건강보험료 등의 단일 기준이 아닌 보다 공정하고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마련 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원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재정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채무 상환 계획과 향후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분석이 필요하며, 사업 집행과정에서 시·군별 집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자체/직접) [복지정책과]

<사업명세서 385p, 사업설명서 40p>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악화된 민생경제 속 금융취약계층 안정망 구축
 - (사업대상)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수급자 등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도민
 - (사업내용) 1인 200만원 한도 대출(금리 연 1%) 및 복합지원
 - ※ 상환방식 : 최장 10년 상환(1년 만기 일시상환·재약정)

- (추진체계) [도] 사업비 출연·총괄 → [경기복지재단] 사업 주관
→ [수행기관] 대출 실행·관리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복합지원

○ 예산 요구액 : 증 30억원(도 30억원)

※ 보조비율 : 도 100%

(단위 : 백만원)

편성목(통계목)	부기명	경정액(A)	기정액(B)	금회요구액(A-B)	산출내역
계		6,000	3,000	3,000	
출연금 (출연금)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6,000	3,000	3,000	○ 대출지원금 3,000,000천원

- 2026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으로서, 상반기 1차 모집('26. 2. 11.) 결과 총 1,618명에게 20억 6천만원 대출을 지원하여 실제 생계형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 수요가 확인됨
- 최근 악화된 민생경제 속에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극저신용자에 대한 긴급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취약계층 긴급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금융 사각 지대의 극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30억원을 증액(100%) 요구하고 있으나, 수요조사·대기자 현황 등 증액 규모에 대한 객관적·정량적 산출 근거가 부족함
- 2026년도 본예산안 검토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전 사업(경기복지재단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업명만 변경한 단순 연장·확대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연체율·상환율·사후관리·고용복지 연계 미흡 등의 한계를 이번 후속 사업에서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
- 사업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환금 재활용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체율 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예산 확대 시에는 수요조사·대기자 수·모집 경쟁률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산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량과 예산의 연계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훈대상자 지원(자체/지원)** [복지정책과] <사업명세서 386p, 사업설명서 49p>

○ 사업 개요(참전명예수당)

- (사업목적)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통한 유공자 자긍심 고취 및 명예 선양
- (지원대상) ①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②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1인당 年 80만 원 지원('26.5월 말 지급 예정)

«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인상 현황 »
• ('22년) 1인당 年 26만원(월 약 2.1만원)
• ('23~'24년) 1인당 年 40만원(월 3.3만원), 전년 대비 53.8% 인상
• ('25년) 1인당 年 60만원(월 5만원)으로 인상, 전년 대비 50% 인상
• ('26년) 1인당 年 80만원(월 약 6.6만원)으로 인상, 전년 대비 33.3% 인상

○ 예산 요구액 : 증 10억 2천5백만원(도 10억 2천5백만원)

※ 보조비율 : 도 10~50% / 도 100%(참전명예수당)

(단위 : 백만원)

편성목(통계목)	부기명	경정액(A)	기정액(B)	금회요구액(A-B)	산출내역
계		39,532	38,507	1,025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93	293	-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자랑채원))	참전명예수당	33,825	32,800	1,025	○ 생존유공자 800천원 × 980명 = 784,000천원 ○ 사망유공자 201천원 × 1,200명 = 241,200천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5,300	5,300	-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96	96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등 지원	18	18	-	

- 해당 사업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여 사회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참전명예수당을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상향('25년 60만 원 → '26년 80만 원)한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라는 정부의 권고 기조에 부응하는 조치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의지와 책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 수준으로 미흡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참전명예수당이 매년 '5월'에 연 1회 일괄 지급되는 사업 특성에 기인한 것임
- 당초 예측보다 증가한 980명에 대해 '26.5월 중 차질 없이 수당을 지급하려면,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한 신속한 예산 보충이 불가피하므로 추경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본 사업은 전액 도비(100%)로 지원되는 사업임. 1인당 지급액이 매년 가파르게 인상됨에 따라 사업 총 규모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현 상황에서 향후 도 재정에 상당한 경직성 경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5년 본예산안 편성 시 대상자를 47,000명으로 추계하였으나 '25년 제2회 추경에서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45,153명으로 하향 조정(△1,847명)했고, '26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 등을 사유로 41,000명으로 재차 축소할 바 있음. 그러나 '26년 본예산 확정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대상자가 980명 증가하여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은, 보훈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이 다소 부족함을 시사함
- 향후 도내 참전유공자의 연령별 자연 감소율, 타 시도 전출입 통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규모 팽창이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임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자체/지원) [노인복지과] <사업명세서 390p, 사업설명서 79p>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장기요양등급판정 저소득 노인의 장기요양시설의 안전한 노후생활 도모
 - (지원대상)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하는 기초·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비
 - (지원금액) 급여종류, 판정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전액지원(본인부담 없음)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시설입소비 92%, 재가이용비 94%지원(이외 본인부담)

○ 예산 요구액 : 증 414억 7천1백만원(도 414억 7천1백만원)

※ 보조비율 : 도 50%, 시·군 50%

(단위 : 백만원)

편성목(통계목)	부기명	경정액(A)	기정액(B)	금회요구액(A-B)	산출내역
계		149,198	107,726	41,471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49,198	107,726	41,471	○ 2,694천원 × 15,394명 × 2개월 × 50% = 41,471천원

○ 고령화 심화로 인해 시설 입소가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복지 비용이자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참고 / 연도말 기준 / 단위: 명, %)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비고
대상자 수	32,658	35,358	37,690	41,036	* 연평균 8.2증가
증감율	8.8 ↑	8.3 ↑	6.6 ↑	8.9 ↑	

○ 해당 사업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자원 부족을 이유로 연간 소요액의 절반 수준만 반영됨에 따라, 기 확보된 예산은 6월경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급여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으로, 비용 지급 지연 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난(인건비 차질 등) 및 신규 수급자 입소 제한 등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 발생 우려가 크므로 금회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약 2개월분의 소요액만 추가 확보되는바, 향후 9~12월 미지급분 발생 방지를 위한 2차 추경 등 추가 자원 마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집행부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의 연간 소요액 전액을 본예산에 계상하는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장기요양급여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III. 보건건강국 소관

1.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①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액(A)	추경예산안(B)	증 감 (C=B-A)	증감률 (C/A)
보 건 건 강 국	451,058	475,204	24,146	5.4%
세 외 수 입	-	-	-	
경 상 적 세 외 수 입	-	-	-	
임 시 적 세 외 수 입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	
지 방 교 부 세	-	-	-	
국 고 보 조 금 등	451,058	458,968	7,910	1.8%
국 고 보 조 금	50,933	50,812	△121	0.2%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738	56,648	4,910	9.5%
기 금	348,387	351,508	3,121	0.9%
지 방 채	-	16,236	16,236	
국 내 차 입 금	-	16,236	16,236	
국 외 차 입 금	-	-	-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	-	-	
보 전 수 입 등	-	-	-	
내 부 거 래	-	-	-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액(A)	추경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B-A)	증감률 (C/A)
보 건 건 강 국	451,058	475,204	100%	24,146	5.4%
보 건 의 료 정 책 과	60,490	62,008	13.0%	1,518	2.5%
의 료 자 원 과	30,889	39,615	8.3%	8,726	28.2%
감 염 병 관 리 과	195,732	195,783	41.2%	51	0.03%
건 강 증 진 과	52,043	64,953	13.7%	12,910	24.8%
응 급 의 료 과	34,166	34,852	7.3%	686	2.0%
정 신 건 강 과	63,544	63,799	13.4%	255	0.4%
식 품 안 전 과	14,194	14,194	3.0%	-	-

□ 2026년도 제1회 추경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안은 4,752억 4백만원으로 본예산 4,510억 5천8백만원 대비 241억 4천6백만원 증액(5.4%)했음

- ▲보건의료정책과 ‘국가암관리’ 232억 9천6백만원(12억원 증액), ▲의료자원과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42억원(전액 신규 편성), ▲건강증진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9억 5백만원(11억 7천만원 증액) 및 지방채 차입금 110억 2천7백만원 편성 등 국고보조금등과 지방채 차입금이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임

나.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액(A)	추경예산안(B)		증 감 (C=B-A)	증감률 (C/A)
			구성비		
보 건 건 강 국	795,846	821,081	100%	25,235	3.2%
보 건 의 료 정 책 과	91,858	93,376	11.4%	1,518	1.7%
의 료 자 원 과	92,595	101,321	12.3%	8,726	9.4%
감 염 병 관 리 과	253,435	253,486	30.9%	51	0.02%
건 강 증 진 과	185,028	199,253	24.3%	14,225	7.7%
응 급 의 료 과	52,551	53,167	6.5%	616	1.2%
정 신 건 강 과	102,849	102,948	12.5%	99	0.1%
식 품 안 전 과	17,530	17,530	2.1%	-	-

□ 2026년도 제1회 추경 보건건강국 세출예산안은 8,210억 8천1백만원으로, 본예산 7,958억 4천6백만원 대비 252억 3천5백만원 증가(3.2%)했음

※ 2026년도 제1회 추경 보건건강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11조 4,095억 1천만원의 7.2%를 차지함

□ 신규사업(8개 사업) ※ 부기명 기준

- 보건건강국 소관 신규사업은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지방채)’ 및 의료자원과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지방채)’,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 병원치매안심병동 리모델링(지방채)’, 응급의료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지방채)’ 등 총 8건이며, 모두 국비 교부에 따라 도비(지방채)를 매칭한 국고보조사사업임

<제1회 추경예산안 신규사업 내역(부기명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안	사업내용	비고
계	8개 사업	10,470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국비/지원)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지역보건의료기관)	5	○도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구축비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703(2025.12.19)호	
보건의료정책과	국가암관리(기금/직접) -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지방채)	1,500	○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방사선치료장비 1식)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1705(2026.3.20.)호	
의료자원과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균특/직접) -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지방채)	8,400	○ 경기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 장비 지원(감마나이프 등 3종 3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1298(2026.2.13.)호	
의료자원과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기금/직접) -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치매안심병동 리모델링(지방채)	275	○ 치매안심병동 추가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 본관 2층 일반병동 리모델링(909㎡) - 배터리 파손('24년)된 UPS 교체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3543(2025.12.12.)	시설비
의료자원과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기금/직접) -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치매안심병동 리모델링(지방채)	16	○ 치매안심병동 추가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 건축, 전기(UPS교체 등) 공사 감리용역비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3543(2025.12.12.)	감리비
의료자원과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기금/직접) -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치매안심병동 리모델링(지방채)	3	○ 치매안심병동 추가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 공사 관련 각종 수수료 등 부대비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3543(2025.12.12.)	시설부대비
응급의료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기금/지원) -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지방채)	156	○ 보건복지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선정기관 2개소 지원 - 취약지 의료기관 2개소(용인시 구리시) 운영비 지원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857(2026.4.13.)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국비/지원) -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지방채)	115	○ 정신요양시설의 회계 및 행정 업무 보조를 위한 청년채용을 통해 행정 인력 지원 - 정신요양시설 1개소당 1명 지원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104(2026.4.13.)호	

□ 성립전예산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 보건건강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21개 사업에서 총 136억 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7개 사업에서 총 7억 5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음. 자체사업은 2개 사업 123억 4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음

<< 보건건강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증감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 부기명 기준	합계	국고보조금	자체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	
증감액 (사업 수)	25,235 (30개)	12,892 (28개)	12,343 (2개)	- (-)	- (-)	- (-)
증액 (사업 수)	25,988 (23개)	13,645 (21개)	12,343 (2개)	- (-)	- (-)	- (-)
감액 (사업 수)	△753 (7개)	△753 (7개)	- (-)	- (-)	- (-)	- (-)

□ 20% 이상 증액사업(3개 사업) ※ 부기명 기준

-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부기명 기준)한 사업은, 건강증진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11억 7천2백만원 증액(4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지방채)’ 110억 2천7백만원 증액(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13억 1천5백만원 증액(42%), 총 3개 사업으로, 135억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음
- 이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며, 국비 50%, 시군비 50%의 국고보조사업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지방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은 도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서, 소득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세부사업명이 나뉨

* 세부사업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자체/지원), 보조율 : 도비 70% / 시군비30%

** 세부사업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자체/지원), 보조율 : 도비 30% / 시군비70%

<제1회 추경예산안 20% 이상 증액 내역(부기명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A)	추경안 (B)	증액 (C=B-A)	증액률 (C/A)	증액 내역
계	3개 사업	41,372	54,886	13,514	33%	
건강증진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금/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733	3,905	1,172	43%	○ 국비내시 증액분 반영 - (국비) 1,171,600천원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2696(2025. 12. 18)호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 (자체/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지방채)	35,533	46,560	11,027	31%	○ '25년 미지급금 상계분 및 출생아 수 증가분 반영 - (미지급금상계분) 8,226,007천원 - (출생아증가분) 1,187천원 x 3,372명 x 70%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자체/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3,106	4,421	1,315	42%	○ '25년 미지급금 상계분 및 출생아 수 증가분 반영 - (미지급금상계분) 827,105천원 - (출생아증가분) 932천원 x 1,747명 x 30%

□ 20% 이상 감액사업(2개 사업) ※ 부기명 기준

○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감액(부기명 기준)한 사업은, 의료자원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1천 8백만원 감액(△23%) 및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2억 5백만원 감액(△28%), 총 2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2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음

<제1회 추경예산안 20% 이상 감액 내역(부기명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A)	추경안 (B)	감액 (C=B-A)	감액률 (C/A)	감액 내역
계	2개 사업	798	575	△223	△28%	
의료자원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국비/지원)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78	60	△18	△23%	○ 부천시 2개소 예산 신청 취소로 감액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8454(2025.12.23)호
응급의료과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기금/지원) -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720	515	△205	△28%	○ 사업수행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실 집행예정액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예산액 변경 내시 반영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807(26.1.13)호

다. 보건건강국 주요사업 검토의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자체/지원) [건강증진과] <사업명세서 408p, 사업설명서 95p>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건강관리, 양육지원
-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사업량) 산모 43,950명 * 본예산(산모 36,230명) 대비 7,720명 증가(21.3% ↑)

○ 예산 요구액 : 증 110억 2천7백만원(도 110억 2천7백만원)

* 보조비율 : 도 70%, 시·군 30% / 도비재원 : 지방채(모집공채) (단위 : 백만원)

편성목(통계목)	부기명	경정액(A)	기정액(B)	금회요구액(A-B)	산출내역
계		46,560	35,533	11,027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533	35,53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방채)	11,027	-	1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87천원 x 3,372명 x 70% ≙ 2,801,698천원 ○ '25년도 미지급금 상계분 = 8,226,007천원

- 해당 사업은 '22년 행정안전부 2단계 전환사업(지방기능이양)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응 핵심사업임
- 매년 서비스 단가가 인상('22년 1일당 124.8천원 → '26년 146.4천원, 17.3% ↑)되고 있으며, 출생아 수 증가 및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른 미숙아 등급 상향 적용 등으로 사업비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임
- 또한,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서비스 제공기관 및 건강관리사에 대한 2025년도 미지급금 약 82억에 대한 시급한 재원 보전도 필요함

* (건의사항) 당면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미지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대책 마련할 것

- 금번 추경 편성은 미지급 상계 처리를 통해 전년도 채무를 해소하고, 출생아 증가 분까지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당해 연도 사업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지방기능이양 이후 사업비는 매년 급증하는 반면, 전환사업 보전금은 동일한 수준으로 묶여 있어 도 및 시군의 지방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증액 재원을 지방채(모집공채)로 조달하는 점은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전환사업 보전금의 한시적 보전 기한도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어서 현행 자원구조로는 안정적 사업 유지가 불투명한 실정임
- 본 사업은 중앙정부 정책방향(지침 개정,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라 예산이 수동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구조인 만큼, 집행부는 이양기간 연장 또는 국비사업 환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간 협의를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군별 집행률 편차 관리, 분기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불용 재원의 탄력적 재배분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관리 방안도 병행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자체/지원)** [건강증진과] <사업명세서 408p, 사업설명서 98p>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건강관리, 양육지원
 -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사업량) 산모 12,670명

○ 예산 요구액 : 증 13억 1천5백만원(도 13억 1천5백만원)

※ 보조비율 : 도 30%, 시군 70%

(단위 : 백만원)

편성목(통계목)	부기명	경정액(A)	기정액(B)	금회요구액(A-B)	산출내역
계		4,421	3,106	1,315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4,421	3,106	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2천원 x 1,747명 x 30% = 488,462천원 ○ '25년도 미지급금 상계분 = 827,105천원

- 해당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전국적 확대 추세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제기 등에 따라, 2024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까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임
-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은 앞서 검토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 사업과 동일하게 정부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비스 단가 인상, 미숙아 등급 상향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미지급금 발생 등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준 보조율을 변경(도 50%:시군 50% → 도 30%:시군 70%) 하면서 도비가 2025년 57억 8천1백만원 대비 26억 7천5백만원 감액되었으나, 출생아 수 증가분 반영 및 2025년도 미지급금에 대한 재원 보전이 필요하여 13억 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음
- 전환 사업과의 주요 차이점은, 사업비 전액을 도비와 시군비로 총당해야 하는 점과 보조비율 변경으로 시군의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점이며, 사업비 증가에 따라 도의 재정 부담이 시군으로 전가되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큼
- 전환형과 추가형 사업의 미지급금을 합산하면 2025년 기준 약 145억원에 달하고 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전체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향후 이양기간 연장 또는 국비사업 환원 건의 시 추가형 사업의 재정 부담 현황도 함께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